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삼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695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19.

발의자 : 김삼화 · 임재훈 · 권은희

유의동 · 이동섭 · 김수민

채이배 · 하태경 · 김동철

이찬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액셀러레이터(창업기획자)와 공동으로 창업자를 발굴·육성하기 위한 사업(TIPS 프로그램)을 시행 할 수 있으며,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액셀러레이터 중에서 해당 사업의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음.

이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·운영 중인 TIPS 프로그램은 고급기술인력의 창업 유입, 민간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발굴 및 육성 대상 창업자의 수가 늘어나 동 사업의 운영자도 추가로 선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선정된 일부 사업 운영자의 경우 투자 및 보육역량이 미흡하여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

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8 및 제44조).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2항에”를 “제2항 및 제3항에”로, “선정에”를 “선정 및 선정 취소에”로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 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 운영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2. 제5항에 따른 선정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창업자 발굴·육성 실적이 없는 경우
4. 스스로 선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
5.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제44조 중 “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액셀러레이터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1.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
2. 제4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액셀러레이터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취소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취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의8(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·육성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19조의8(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·육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 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 운영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</u></p> <p><u>2. 제5항에 따른 선정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u></p> <p><u>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창업자 발굴·육성 실적이 없는 경우</u></p> <p><u>4. 스스로 선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</u></p> <p><u>5.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</u></p> <p><u>③ (생 략)</u></p> <p><u>④ 제2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</u></p> <p><u>⑤ 제2항 및 제3항에 -----</u></p>

<p><u>선정에</u>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.</p>	<p><u>선정 및 선정 취소에</u>----- -----.</p>
<p>제44조(청문)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<u>제43조에</u> 따라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, 액셀러레이터, 중 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중소 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 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 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 야 한다.</p>	<p>제44조(청문) ----- 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1. <u>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사업</u> <u>운영자의 선정 취소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2. <u>제4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</u> <u>투자회사, 액셀러레이터, 중소</u> <u>기업창업투자조합, 중소기업</u> <u>상담회사의 등록 취소 또는</u> <u>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</u> <u>취소</u></p>